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5.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9.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정국장 김정수)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용어 및 조문을 명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5조3항 신설)
-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명칭을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정비 (안 별표 중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조문의 명확화 등
(안 제5조제 2항, 안 별표 중 1,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수수료징수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면제를 50% 경감으로 수정하였으며,
 -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분 없이 8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별표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혼란 방지와 신뢰받는
행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2 호
----------	---------

제출연월일: 2019. 6.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용어 및 조문을 명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5조3항 신설)
- 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명칭을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정비 (안 별표 중 1)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조문의 명확화 등(안 제5조 제 2항, 안 별표 중 1,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9. 3.14. ~ 4. 3. / 20일 간):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요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요금”을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100분의50 경감할 수 있다”를 “제17조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제3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수수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1호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8.5.3.〉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4종)

(단위 :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 세목별 과세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건 1필지	800 800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주택 1호 1건	800 500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2) 삭제 3) 삭제 4) 공장설립임지기준 확인 신청 5) 공장등록대상 등본 발급	1건 1건 1건	1,000 2,000 1,000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2) 삭제 3) 국제결혼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 4) 부존재증명<신설>	1건 1매 1건	500 3,500 200	
마. 도시계획 및 확인에 관한 증명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나) 컬러발급	1필지 1필지 1필지	500 1,000 1,500	
바. 회계관계 증명 1) 삭제 2) 물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 증명	1건	1,000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건	500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2종)

(단위 :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대부신청			
가) 신규신청	1건	5,000	
나) 갱신 또는 기간 연장신청	1건	3,000	
2)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2,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법인)	1건	30,000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개인)	1건	20,000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법인, 개인)	1건	800	
6)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8) 삭제			
다. 의료기관 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변경허가	1건	40,000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40,000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변경신고	1건	2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7)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2) 일반유원시설업			
가)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3) 기타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4)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5) 위생처리업	1건	20,000	
6) 위생처리업 변경	1건	10,000	
7) 세척제 제조업	1건	20,000	
8) 세척제 제조업 변경	1건	10,000	
9)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건	20,000	
10)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1건	10,000	
11) 장난감 제조업	1건	20,000	
12) 장난감 제조업 변경	1건	10,000	
13) 위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각 종목별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함			
마.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	
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	
3) 일반게임장업 등록	1건	30,000	
4)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	
5)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6)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변경	1건	5,000	
9)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	1건	20,000	
10)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변경	1건	10,000	
11)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	1건	20,000	
12)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변경	1건	10,000	
13)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	1건	20,000	
14)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변경	1건	5,000	
15)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1건	20,000	
16)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	1건	10,000	
17)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	1건	20,000	
18)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 변경	1건	5,000	
19)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20)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	1건	5,000	
21) 영화상영관 신규 등록(신설)	1건	20,000	
22)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설)	1건	10,000	
23)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신규 신고<신설>	1건	20,00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24)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변경 신고 〈신설〉	1건	10,000	
2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신설〉	1건	5,000	
2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	4,000	
바.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	1건	10,000	
사. 어업 수산업에 관한 사항			
1)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1건	800	
2)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1건	800	
3)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4)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아.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1건	10,000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	
자. 석유판매에 관한사항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20,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10,000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1건	10,000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20,000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	10,000	
차.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슬 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사항(1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류 및 <u>요액</u>)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종류 및 <u>금액</u>) ----- -----.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생 략)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u>요율</u> 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의2(징수방법)① (현행과 같음) ② ----- ---- <u>금액</u> ----- -----.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생 략) 1. ~ 11. (생 략) 1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100분의50 경감할 수 있다. 〈 <u>신 설</u> 〉	제5조(수수료의 <u>감면</u>) ①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 <u>삭 제</u> 〉 ② -----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제3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수수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1호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5종) (단위 : 원)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4종) (단위 :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생략 1) 생략 2) 세목별 <u>과세(납세)증명</u> 3) 생략	1건	800		가. (현행과같음) 1) 현행과 같음 2) 세목별 <u>과세증명서</u> 3) 현행과 같음	1건	800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5종)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2종)			